

특정감사

# 감 사 보 고 서

- 2021년 위탁사업 관리실태 -

2021. 4.

통 계 청

# 1.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목적

- 위탁사업에 관한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 위탁사업 계약, 절차 및 관리 등 비효율적인 요인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위탁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통계청(◆과 등 27개 위탁사업 소관부서),  
(재)♡♡ 및 (재)♥♥
- 감사범위 : 위탁사업 계약, 절차 및 관리 등 위탁사업 업무 전반

##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1. 3. 22. ~ 3. 31.(8일간)
  - 사전교육 실시 : '21. 3. 19.(금), 14:00 ~ 16:00
- 감사대상기간 : '19. 1. 1. ~ '20. 12. 31.까지(2년)
- 감사인원 : 감사반장(감사담당관) 등 11명

## 4. 감사중점사항

- 위탁사업 절차 및 관리의 적정성
- 위탁사업 사후 관리의 적정성 등

## II.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명세

#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1)

제 목 「田田 유지관리 용역사업」 착수계 관리 부적정  
 소 관 국 통계서비스정책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통계서비스정책관(이하 서비스정책관)에서는 통계생산시스템을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제공을 위해 매년 ♠과에 의뢰하여 시스템 유지 관리 등의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1> 참조

<표1> 「田田 유지관리 용역사업」 계약체결 현황

연번	사업부서	용역사업 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업체	계약 방법
1	❀과	2019년 ❀❀ 유지관리 사업	180,000	○○(주)	수의
2		2019년 田田 유지관리 사업	134,000	○○(주)	수의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0.12.24.)』 ‘제4조(계약문서) 제1항’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예규 ‘제6조(통지 등) 제1항’에 따르면,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등 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4호, 2020.5.1.)』 ‘제5조(용역수행)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 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지침 ‘제2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정책관은 시스템 유지관리 등의 용역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 후 제출한 착수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문서로 보완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하고 승인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감사대상기간(2019. 1. 1. ~ 2020. 12. 31.) 중 서비스정책관 ☞과에서 추진한 용역사업에 제출된 착수계를 검토한 결과, 「2019년 ☞☞ 유지관리 사업」 등 2건은 용역사업비 산정 및 지급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았지만, 문서로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승인하였다.

\* 계약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착수계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 (EA&PMS관리시스템)에만 등록 및 관리하고 있음

그 결과,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조(통지 등)’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 관계부서 의견

서비스정책관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직원들의 교육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착수계에 필요한 서류들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통계서비스정책관은 앞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착수계 관련 서류 누락 등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통 계 청

##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2)

제 목 「'20년 ◎◎ 위탁사업」 연구원 참여율 관리 부적정  
소 관 국 통계정책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통계정책국(이하 정책국)에서는 「◎◎ 위탁사업」을 ♠과에 계약 의뢰하여 (재)♡♡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표1> 참조

<표1> 「◎◎ 위탁사업」 계약체결 현황

연번	사업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계약업체	계약방법
1	2019년 ◎◎ 위탁사업	2019.2.15.~ 2019.11.29.	1,477,800	(재)♡♡	수의계약
2	2020년 ◎◎ 위탁사업	2020.2.17.~ 2020.11.30.	1,334,500	(재)♡♡	수의계약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예정가격산정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4호, 2019.6.1.)』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동 예규 ‘제26조(인건비)’에 따르면,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별표5에서 정한 기준 단가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표2> 참조

<표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예정가격산정기준』 별표5, '19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16,863원
연구원	월 2,466,647원
연구보조원	월 1,648,871원
보조원	월 1,236,695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4호, 2020.5.6.)』 ‘제5조(용역수행) 제2항’에서 제4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지침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제2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국에서는 「○○ 위탁사업」 계약상대자가 착수계를 제출하였을 때, 투입 연구원 업무분장을 검토하여 특정 연구원의 용역 참여율이 100%가 넘지 않도록 배치할 것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감사대상기간(2019. 1. 1. ~ 2020. 12. 31.) 중 정책국 ○과에서 추진한 「2020년 ○○ 위탁사업」의 연구원 업무분장 및 참여율 내역을 검토한 결과, (재)♡♡ 연구원 C에게 ‘관리연구보조원’(참여율 95.4%)과 통계 2종의 ‘진단연구보조원’(참여율 14.0%)으로 업무를 부여하여 총 용역 참여율이 109.4%가 되는 등 총 3명의 연구원에게 참여율이 100%를 넘도록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참조

<표3> 「2020년 ◎◎ 위탁사업」 연구원 참여율 100% 초과 내역

소속	성명	위탁사업명	업무구분	구분별 참여율	합계 참여율	비고
(재)♡♡	C	2020년 ◎◎ 위탁사업	관리연구보조원	95.4%	109.4%	'20.3.31. 인력교체 (퇴사)
			진단연구보조원(2종)	14.0%		
(재)♡♡	A	2020년 ◎◎ 위탁사업	관리연구보조원	95.4%	102.4%	-
			진단연구보조원(1종)	7.0%		
(재)♡♡	B	2020년 ◎◎ 위탁사업	관리연구보조원	95.4%	102.4%	-
			진단연구보조원(1종)	7.0%		

그 결과,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5조(용역수행)’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정책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위탁사업에 투입되는 인력별 참여율을 관리하여 향후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통계정책국장은 앞으로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착수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원 참여율 100% 초과 등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통 계 청 통 계 보

(일련번호 : 3)

제 목 「○○ 위탁사업」 관리 미흡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과에서는 통계체험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자 「○○ 위탁사업」을 (재)♡♡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1> 참조

<표1> 「2020년 ○○ 위탁사업」 계약체결 현황

연번	사 업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계약업체	계약방법
1	2020년 ○○ 위탁사업	2020.1.1.~ 2020.12.31.	53,020	(재)♡♡	수의계약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8호)』 ‘제20조(검사)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완성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계약실무(통계청 ♠과, 2020.10.)』 53P에 따르면, 「사업결과 확인을 위해 계약서, 과업내용서, 제안서, 계약조건, 산출내역서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결과물 접수 및 최종 확인」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과는 완료보고서 제출일('20.12.15.)로부터 14일 이내에 ○○ 관련 계약 이행상황을 검사하여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감사대상기간(2019.1.1. ~ 2020.12.31.) 중 ♠과에서 추진한 「○○ 위탁사업」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이 제출('20.12.15.)한 완료보고서에는 홍보용 리플릿을 '20.12월 중 제작(4,000부, 2,800천원)하고 배포(우편발송, 1,000천원)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최종결과보고서('21.1.8.)에는 홍보용 리플릿 제작부수를 축소(4,000부 ⇒ 2,000부)하고, 배포(우편발송)도 '21년 상반기로 연기하는 등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검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2020년 ○○ 위탁사업」 검사 내역

구분	'20년 사업계획서 ('20.1.10.)	'20년 완료보고서 ('20.12.15.)	'20년 최종보고서 ('21.1.8.)	계약이행 내역	검사 내역	비고
리플릿	2,800천원 (700원×4,000부)	'20.12월 중 제작 예정	2,000부 제작	△2,000부 (미제작)	이상없음	시정조치 없음
우편발송	1,000천원	'20.12월 중 발송 예정	'21년 상반기 예정	△1,000천원 (미발송)	이상없음	시정조치 없음

### 관계부서 의견

♠과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 위탁사업」 사업계획 수립 시 위·수탁기관 담당자 회의 실시 및 사업 결과물을 최종 확인하여 사업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변경사유서'를 작성·보고토록 하는 등 위탁사업 관리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사업 관리 업무가 미흡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통 계 청 개 선 요 구

(일련번호 : 4)

제 목 통계사무 위탁사업 성과평가 미흡  
소 관 국 통계정책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통계정책국(이하 정책국)은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75호, 2018.9.4.)』 및 「통계사무 위탁운영 성과평가 지침(◆과-3199호, 2019.11.29.)」 규정에 따라 통계사무 위탁사업에 대한 수탁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매년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통계청고시)』 ‘제9조(사업위탁 및 계약)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수탁기관에게 매년 사업개시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 고시 ‘제10조(감독, 보고 및 수탁기관 의무) 제6항’에는 「통계청장은 수탁기관의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차기 수탁기관 지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계사무 위탁운영 성과평가 지침(◆과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의 매년 위탁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동 지침의 7개 성과평가 지표<sup>1)</sup> 가운데 ‘성과목표 달성도’에 대한 지표는 수탁기관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지표정의, 계산식, 기준시점 및 목표치 등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참조

1) ①성과목표달성도, ②서비스개선 노력도, ③사업이해 및 계획 적정성, ④사업운영효율성, ⑤사업역량 적절성, ⑥보안관리, ⑦대외대응

### <그림> 위탁사업 성과평가 절차

단계별 절차	시기	주요 내용
성과목표 설정 (사업부서)	1월 (전년 11~12월)	: 사업계획서 작성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평가 실시 (사업부서)	1월~12월	: 위탁사업별 성과평가 실시 서비스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		
성과평가 결과 제출 (사업부서)	익년 1.15.	: 사업부서 → 통계정책과
↓		
성과평가 종합결과 작성 (통계정책과)	익년 1월	: 위탁사업별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수탁기관별 종합 평가결과 작성
↓		
성과평가 종합결과 보고 (위탁심의위원회)	익년 2월	: 통계사무 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수탁기관별 종합 평가결과 보고

출처 : 「통계사무 위탁운영 성과평가 지침」

따라서 정책국에서는 통계사무 위탁사업 수탁기관 지정에 활용되는 성과평가를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통계청고시)』 및 「통계사무 위탁운영 성과평가 지침(◆과지침)」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매년 위탁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가 실질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감사대상기간(2019.1.1. ~ 2020.12.31.) 중 정책국 ◆과의 2020년 위탁사업 성과평가 대상 11개 사업부서<sup>2)</sup> 17건의 위탁사업 성과평가 내역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 작성시 ‘성과목표 달성도’ 목표치 미설정 3건<sup>3)</sup>, ‘성과목표 달성도’ 목표치를 사업담당자 임의 변경·설정 5건<sup>4)</sup> 이었고, 그 외 6개 지표는 객관적인 세부평가 기준 없이 사업담당자 1인이 정성평가<sup>5)</sup>로 갈음하는 등 전반적인 위탁사업 성과평가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2) ♠과, ☒담당관,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3) ‘●● 위탁 사업(●과)’ 등  
 4) ‘♣♣ 위탁운영 사업(♥과)’ 등  
 5) ‘○●’ 등 15건

**<표> 2020년 위탁사업 성과평가 주요 미흡 내역**

연번	위탁사업명	수탁 기관	사업부서	성과목표달성도 목표치 설정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평가 평가자
1	☞☞ 위탁 사업	(재)♡♡	◆과	전년도 합격자 대상 설문조사 15% 이상 회수	208%	2인
2	●○ 사업	(재)♡♡	♣과	미설정	-	1인
3	♣♣ 위탁운영 사업	(재)♡♡	♡과	MD이용건수 71,233건 (83,723건: 평가시 변경)	132.5% (113%)	1인
4	☒☒ 위탁 사업	(재)♡♡	♡과	MD이용건수 71,233건 (83,723건: 평가시 변경)	132.5% (113%)	1인
5	●○ 위탁사업	(재)♡♡	●과	국재통계이용건수 135만건 (적시 반영률 98% 평가시 변경)	91.8% (102%)	1인
6	●● 위탁 사업	(재)♡♡	●과	미설정	-	1인
7	◀◀ 사업	(재)♡♡	◀과	통계포털 후 검증성도를 98% (100% 평가시 변경)	103.5% (99.4%)	1인
8	◇◇ 사업	(재)♡♡	◇과	이용건수 144건 (132건: 평가시 변경)	102.8% (112%)	1인
9	▣▣ 사업	(재)♡♡	▣과	통계의 창 이용자 만족도 4.4	100.2%	1인
10	▨▨ 사업	(재)♡♡	▣과	미설정 (재능기부 수혜학교 수 206개교 평가시 설정)	103%	1인

**관계기관 의견**

정책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통계청고시)』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통계사무 위탁운영 성과평가 지침(◆과지침)」을 개정 등 통계사무 위탁사업 성과평가 관련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통계정책국장은 앞으로 통계사무 위탁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하면서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통계청고시)』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통계사무 위탁사업 성과평가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통계사무 위탁운영 성과평가 지침(◆과지침)」 개정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